

2018년 노원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노원구청장(인)

- ◆ 우리구의 '18년도 예산규모는 8,177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8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182억원)보다 995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304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6,12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47억원입니다.
- ◆ 우리구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1.1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8.26%입니다.
- ◆ 우리구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억원의 흑자이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융자 지출 등으로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억원 적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구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예산 규모는 크지만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owon.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이은경(☎2116-3163)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노원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8,177	7,299	878	7,182	6,432	750
	세출예산	8,177	7,299	878	7,182	6,432	750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1.13	20.79	0.34	35.52	36.2	△0.68
	재정자주도[당초예산]	48.26	49.89	△1.63	55.47	56.59	△1.12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20	-13	△6	-17	-14	△2
재정운영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구-1(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유사 지방자치단체는 2017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구분 기준에 의함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노원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17,694	774,151	0	17,040	26,50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73,019	637,255	694,947	729,926	817,69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32,920	100	596,158	100.0	652,138	100.0	688,586	100.0	774,151	100.0
지방세	59,690	11.2	62,258	10.4	66,342	10.2	68,951	10.0	72,143	9.3
세외수입	32,200	6.0	32,353	5.4	48,954	7.5	53,330	7.7	48,942	6.3
지방교부세	5,790	1.1	6,036	1.0	6,223	1.0	7,535	1.1	7,987	1.0
조정교부금 등	151,681	28.5	163,414	27.4	179,159	27.5	192,864	28.0	202,043	26.1
보조금	274,008	51.4	322,097	54.0	341,460	52.4	345,050	50.1	400,579	51.7
지방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551	1.8	10,000	1.7	10,000	1.5	20,855	3.0	42,458	5.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노원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17,694	774,151	0	17,040	26,50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73,019	637,255	694,947	729,926	817,69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32,920	100	596,158	100	652,138	100	688,586	100	774,151	100
일반공공행정	35,965	6.8	34,897	5.9	26,134	4.0	30,441	4.4	33,513	4.3
공공질서 및 안전	661	0.1	667	0.1	734	0.1	786	0.1	1,085	0.1
교육	13,412	2.5	13,593	2.3	13,378	2.1	16,878	2.5	14,313	1.9
문화 및 관광	8,113	1.5	10,432	1.8	18,541	2.8	29,386	4.3	33,917	4.4
환경 보호	12,969	2.4	15,001	2.5	27,233	4.2	30,340	4.4	30,687	4.0
사회 복지	320,677	60.2	371,544	62.3	400,314	61.4	400,691	58.2	472,541	61.0
보건	14,103	2.7	17,207	2.9	18,827	2.9	19,198	2.8	24,151	3.1
농림해양수산	0	0	0	0	0	0	0	0	0	0
산업·중소기업	641	0.1	1,226	0.2	933	0.1	923	0.1	1,133	0.2
수송 및 교통	4,221	0.8	4,169	0.7	3,823	0.6	7,848	1.1	6,672	0.9
국토 및 지역개발	4,088	0.8	4,571	0.8	8,803	1.4	10,453	1.5	5,855	0.8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5,330	1.0	5,903	1.0	6,130	0.9	6,218	0.9	7,753	1.0
기타	112,739	21.2	116,948	19.6	127,289	19.5	135,423	19.7	142,532	18.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노원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749,929	849,609	99,680	13.29
노원구	729,926	817,694	87,767	12.02
공사·공단	18,596	24,456	5,860	31.51
출자·출연기관	1,406	7,460	6,053	430.4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사·공단(1개) : 노원구 서비스공단
- ▶ 출자출연기관(2개) : 노원교육복지재단, 노원환경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노원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1.1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1.13 (15.64)	774,151 (774,151)	163,543 (121,085)	610,609 (610,609)	0	0 (42,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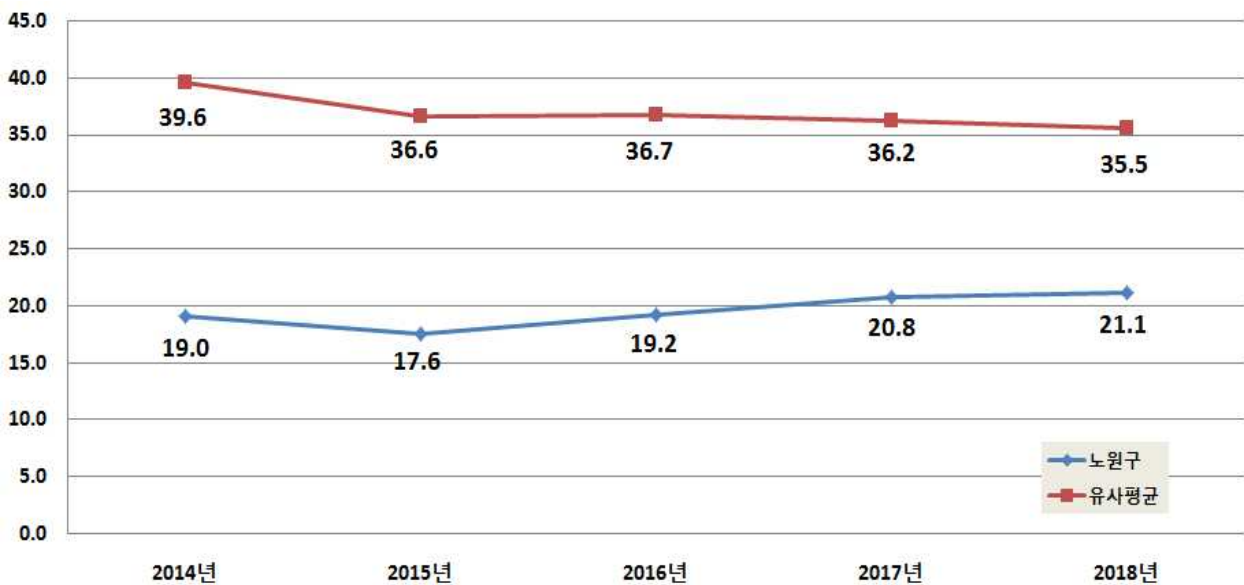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9.04 (17.24)	17.55 (15.87)	19.21 (17.68)	20.79 (17.76)	21.13 (15.6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적 특성과 국가 주도의 복지예산(보조금)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세 확충 노력을 경주한 결과 소폭이나마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노원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8.2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8.26 (42.77)	774,151 (774,151)	373,572 (331,115)	400,579 (400,579)	0	0 (42,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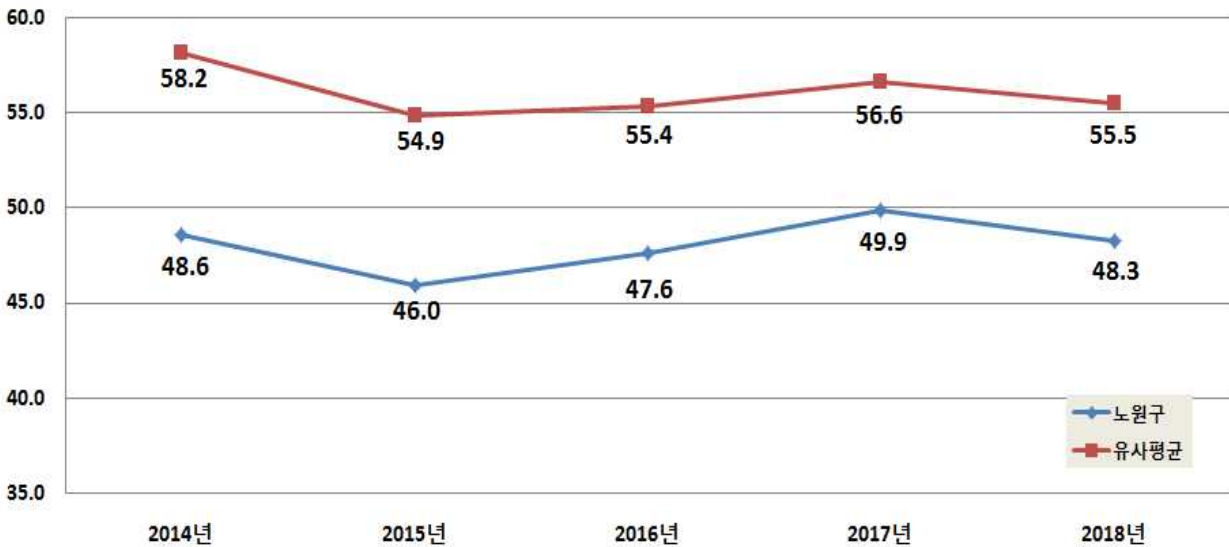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48.58 (46.79)	45.97 (44.29)	47.64 (46.11)	49.89 (46.86)	48.26 (42.7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적 특성과 국가 주도의 복지예산(보조금)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세 확충 노력을 경주한 결과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며 재정자주도의 변동 추이는 유사 자치단체 평균의 추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노원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용자 회수 (C)	용자 지출 (D)	순용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742,930	791,109	2,181	5,633	3,452	49,662	794,561	-51,630	-1,968
일반회계	731,694	773,461	0	0	0	42,458	773,461	-41,768	690
기타 특별회계	9,645	14,960	104	1,993	1,889	7,205	16,849	-7,204	1
기 금	1,592	2,687	2,077	3,640	1,563	0	4,250	-2,658	-2,658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용자(용자지출-용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13,256	-15,813	-20,524	-29,293	-51,630
통합재정수지 2	266	2,431	-1,131	-1,326	-1,968

☞ 노원구의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1>은 순세계잉여금이 공제된 수치이며,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2>의 적자 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열악한 노원구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도 재정운용에 있어 세입 증대 및 지출 절약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수지2>의 적자는 기금회계에서 발생하는 것(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흑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의 용자지출이 포함된 적자입니다. 기금의 용자는 지역 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향후 회수가 가능한 항목이므로, 그 자체로 재정운용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노원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902,367	930,130	947,354	981,887	1,014,913	4,776,651	3.0%
자 체 수 입	141,927	145,083	148,147	151,336	154,572	741,065	2.2%
이 전 수 입	674,973	698,997	712,040	740,875	769,096	3,595,981	3.3%
지 방 채	0	0	0	0	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5,467	86,049	87,167	89,676	91,245	439,604	1.6%
세 출	902,367	930,130	947,354	981,887	1,014,913	4,776,651	3.0%
경 상 지 출	191,877	207,652	202,090	208,229	231,505	1,041,353	4.8%
사 업 수 요	710,490	722,477	745,264	773,658	783,408	3,735,297	2.5%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노원구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4	17,043
여성정책추진사업	7	10,9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	5,64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445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노원구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817,694	450	모델 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50,000	
자치행정과	여름철 횡단보도에 햇빛가림 파라솔을 설치해주세요	44,000	
생활건강과	치매환자 복약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메디박스' 대여	30,000	
공원녹지과	숲속 힐링과 더불어 행복습관 체험프로그램	30,000	
생활건강과	건강한 모성보호를 위한 알코올 예방사업	30,000	
사회보장과	저소득주민 지식나눔 희망공동체 교실운영	30,000	
공원녹지과	불암산도시공원 들레길 진달래(철쭉) 식재	30,000	
생활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한 마음건강 실천학교 운영	28,000	
토목과	LED가로등 교체(광운대역~월계1동주민센터)	11,500	
어르신복지과	50+ 스마트폰, 환경생태 강사단 양성 및 파견사업	30,000	
체육청소년과	위기청소년 SOS홍보영상 제작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30,000	
공원녹지과	상계6,7동 느티울근린공원, 상계8동 갈말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50,000	
공원녹지과	로보카폴리 어린이교통공원 노후울타리 정비	50,000	
자치행정과	중계2,3동주민센터 내 모성보호공간 및 휴게공간 마련	7,000	
건축과	아파트 지하보도 벽화그리기 (노원지하보도, 당현지하보도)	29,000	
토목과	공원산책로 LED 등기구 교체 (상계주공13단지APT 뒤편)	20,500	

4-4. 성과계획서

-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노원구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54	160	147	791,191	703,583	87,608
감사담당관	1	1	4	5	195	193	2
행정지원국	1	9	26	28	172,638	159,216	13,422
기획재정국	1	7	23	23	19,862	16,589	3,273
교육복지국	1	13	33	23	486,812	418,536	68,275
도시계획국	1	6	21	17	9,039	13,383	-4,344
교통환경국	1	10	32	28	61,635	60,601	1,035
보건소	1	7	19	22	36,568	30,945	5,623
의회사무국	1	1	2	1	4,441	4,120	32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1.13	48.26	61.04	15.79	65.7	86.6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344	78	-210
	부단체장		5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40	1,100	-54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355	145	-0.4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34	
	의원국외여비		76	
지방보조금		9,010	6,243	-2,76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622	2,534	-88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179	3,958	1,779
공무원 일·숙직비		147	147	0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해당 없음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자치구는 특·광역시에 합산 반영됨에 따라 공시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해당 없음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자치구는 특·광역시에 합산 반영됨에 따라 공시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 2017년에 우리 노원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74백만원
예산편성 위반	직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131백만원
예산편성 위반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41백만원
수입징수 태만	토지굴착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부적정	2백만원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해당없음